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세무사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무사등록증 및 세무법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8. ~ 3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중 “영 제14조의3제1항”을 “영 제14조의6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3제1항 중 “영 제14조의3제2항”을 “영 제14조의6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14조의3제3항”을 “영 제14조의6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국세청장(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)”를 “국세청장”으로, “징계위원회”라한다)에 제출하여야”를 “징계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해야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등록번호

세무사등록증

성명:

생년월일:

등록구분:

등록일자:

등록갱신일자:

유효기간:

사진

(3.5cm × 4.5cm)

「세무사법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세청장(한국세무사회장) 인

세무법인 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10일	
세 무 법 인	명 칭	(한글)			
		(한자 등)			
	주사무소 소재지		(전화번호:)		
대 표 이 사	성 명	세무사등록번호	성 명	세무사등록번호	
이 사	성 명	세무사등록번호	성 명	세무사등록번호	
자 본 금	백만원		출자 1좌의 금액	원	
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○○세무법인 대표이사 ② 국세청장 귀하					
첨부서류	1. 정관 1부 2. 대표이사의 이력서 1부 3.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세무사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1부 4.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(현금출자의 경우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,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) 1부 5. 주사무소와 분사무소(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				수수료 없 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세무법인등록신청서)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 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의3서식과 같다.	제13조의2(세무법인등록신청서)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 법인 등록신청서----- -----.
제13조의3(세무법인등록부 등)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 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 서식과 같다.	제13조의3(세무법인등록부 등) ① 영 제14조의6제2항----- ----- -----.
②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세 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 5서식과 같다.	②영 제14조의6제3항----- ----- -----.
제14조(징계요구)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(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)과 한국세무사회의 장,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, 대 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 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 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(이하 “징계 위원회”라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4조(징계요구) ----- --- 국세청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징계 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해야 -- ----.